

2026년 양주행복마을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, 입소절차,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

【입소정원】

- ① 양주행복마을요양원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.

【입소대상자】

-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받은 자
 -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 파킨슨병이나 노인성 뇌혈관 질환 대상자로 장기요양등급 1, 2등급 판정자
 - 3, 4, 5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써 [시설급여] 이용가능 자
-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
- ③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,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어르신

【모집방법】

- ①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홈페이지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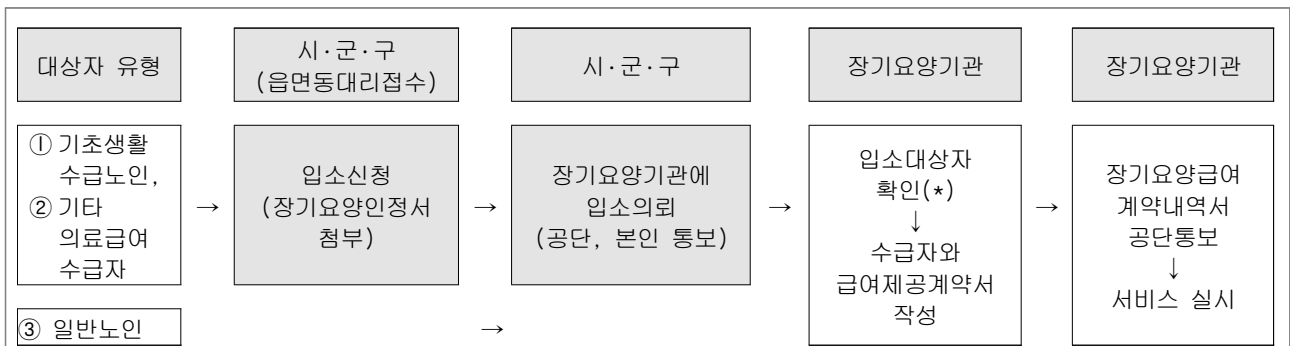
【입소절차】

-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~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.

※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: 장기요양인정신청(공단 지사) → 방문조사 →

등급급판정위원회 →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→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

※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.



【구비서류】

양주행복마을요양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입소계약서 (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)
2.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
3.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4.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5.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
6. 입소자 처방전
7.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
8. 비상응급동의서
9. 가정간호동의서

2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(계약목적, 계약기간,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,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)

【계약목적】

- 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(시설서비스 가능 등급)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, 의료, 재활, 여가,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【계약기간】

-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② 다만,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(요청)에 따라 각 호와 같이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③ 기관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【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】

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입소 보증금 : 없음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(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, 급여제공계약을 통하여 명기한다.)
- ③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.
- ④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시설의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

비교 구분		2026년 장기요양급여총액	본인부담금		
			일반 (20%)	감경 (12%)	감경 (8%)
본인 부담금 (A)	1등급	2,655,600	531,120	318,670	212,440
	2등급	2,463,600	492,720	295,630	197,080
	3~5등급	2,326,200	465,240	279,140	186,090
비급여 (B)		식사재료비 2026년 1일 식대 11,100원 1일 간식비 500원	348,000원 (30일기준 /식대, 간식비) * 2026년 1일 1식 3,700원 x 3회 = 11,100원 * 2026년 1일 간식 : 1회 500원		
		상급침실(월)	100,000원		
합 계 (A) + (B)		1등급	879,120	666,670	560,440
		2등급	840,720	643,630	545,080
		3 ~ 5등급	813,240	627,140	534,090

【계약의 해제】

-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-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
-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- ⑦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】

- ①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- ②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
-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【입소자의 의무】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【입소자의 제공 서비스】

- ① 건강관리 서비스
- ② 의료 서비스
- ③ 생활문화 서비스
- ④ 인지, 여가 프로그램
- ⑤ 영양 서비스

【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】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
-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.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

【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】

-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
-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
-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
-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
3. 시설의 규모 및 현황

대 지	1,405㎡	건평	686.51㎡
-----	--------	----	---------

구분	침실	특별 침실	사무 실	간호사 실	물리 치료실	프로 그램실	식당	조리실	화장실/ 목욕실	세탁장
시설	8	1	1	1	1	1	1	1	6	1

4.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여부

1.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

- 1) 상 품 명 : 한화 복지시설 배상 책임 보험 가입 - 한화손해보험
- 2) 보장기간 : 2025년 8월 1일부터 2036년 8월 1일까지

2. 화재보험 가입여부

- 1) 상품명 : 화재보험 - 현대해상화재보험
- 2) 보장기간 :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8월 1일까지